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0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7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“2020. 12. 31. 까지” 에서 “2025년 12월31일까지” 로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는,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경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- 청소년육성기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위해 1979년 설치된 것으로,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은 아님.

<청소년 기본법>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**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결정일: 9.11)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임.

<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>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**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**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**지방재정법**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**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**를 거쳐야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되었고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도 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현황

□ 개 요

- 설치근거 : 청소년기본법 제56조
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목 적 :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
- 지원내용 :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 학자금, 직업훈련, 자립 정착금 지급
- 재 원 : 도 출연금, 이자수입 등

□ 연도별 지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 산 액	인원	지 원 액	비 고
2016년	12,000	21	10,500	장학금 지원 (1인당 50만원)
2017년	11,000	22	11,000	
2018년	12,500	25	12,500	
2019년	15,500	31	15,500	
2020년	20,000	40	20,000	

□ 연도별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수입내역(A)				지출내역(B)		잔액 (C=A-B)	연도말 조성규모
	계	전입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사업비		
'16	210,821	200,000	9,432	1,389	10,500	10,500	200,321	1,179,424
'17	311,793	300,000	10,434	1,359	11,000	11,000	300,793	1,480,217
'18	11,327		11,327		12,500	12,500	-1,173	1,479,044
'19	23,294	-	20,395	2,899	15,500	15,500	7,794	1,486,838
'20	26,602		25,246	1,356	20,000	20,000	6,602	1,493,440